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79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황운하
최혁진 · 김재원 · 서영석
박수현 · 이재강 · 김준혁
손 술 · 정혜경 · 민형배
이주희 · 한창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상당수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임. 그러나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 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정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소방 · 배관 · 전기 등 분리발주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

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및 87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설계비 제외)을 말한다.

제87조제1항 중 “건설공사를”을 “총공사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u>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u> <u>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u> <u>합계액(설계비 제외)을 말한</u> <u>다.</u>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건설공사를</u>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 ---- <u>총공사금액 이상의 건설공</u> <u>사를</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